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고 성 군 의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808호)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7. 1.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2024. 7. 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2024. 7. 17.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정이유

2023년 고향사랑기금 결산 사항 반영 및 2024년 기금사업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고성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 금 명: 고향사랑기금

나. 설치목적: 고향사랑기부자의 선의 존중, 주민 복리 증진 등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목적 구현, 고향사랑기금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다. 설치년도: 2023년도

라. 2024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558,801	477,665	81,136	합 계	558,801	477,665	81,136
예치금 회수	352,486	271,350	81,136	기금 사업	109,100	0	109,100
이자 수입	6,315	6,315	0	예치금	449,701	477,665	△27,964
기타 수입	200,000	200,000	0				

4. 관련 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나.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5. 의결요청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3년 고향사랑기금 결산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변경된 2024년도 기금 규모는 558,801천원으로 기정 대비 81,136천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수입 변경내용은 예치금회수 81,136천원 증액이며, 지출 변경 내용은 기금사업 109,100천원 증액과 예치금 27,964천원 감액임.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23년 결산사항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없음

9. 심사결과: 2024. 7. 17.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